



주요 사업 내용

01 사업대상

(1) 대상 농지

- '18년 농타작물재배지원사업 지원금 수령 농지
 - * '18년 사업 시 다년생 작물 재배 참여 농지는 제외(다만, 해당 작물을 지하부까지 모두 제거한 후 '19년 신규작물을 식재하는 경우 사업 참여가능)
- '18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(농업경영체 정보등록 농지)
- '18년산 변동직불금 수령 대상 농지

(2) 대상 농업인(또는 법인)

-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(또는 법인)
- '휴경' 신청 시에는 최근 3년('16.~'18.) 중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(또는 법인)
 - * 위 농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농업인도 허용(실경작자)

사업 대상 제외 농지

간척지, 정부매입비축농지, 농촌진흥 기관이 추진하는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, 경관보전 직불금 수령 농지(하계작물 해당) 등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

02 사업신청

- 농지소재지의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접수('19.1.22 ~ 6.28)
 - * 현장상황에 따라 7. 10일까지 사업신청 가능
- 읍·면(리·통)·동 주민센터 및 마을대표 농가에 비치된 신청서와 약정서를 작성하여 마을대표의 확인(날인 또는 서명)을 받아 제출

- '휴경' 신청 농업인은 '1년 이상 경작 사실 확인서' 제출(단, '18년 농타작물재배지원사업 참여 농업인 및 최근 3년간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는 제출 생략)
- 자가소비 이외 유통·판매를 목적으로 하계조사료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(또는 법인)은 사업신청서 제출시 '2019년산 하계조사료 출하약정 확인서' 제출

03 대상품목

- 사업 대상 제외 작물 이외의 1년생 및 다년생 작물
 - 무, 배추, 고추, 대파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

04 지원단가

- 평균 단가 340만원/ha(국비 80%, 지방비 20%) 내에서 조사료, 일반·풋거름작물, 두류, 휴경 등 단가 차등화
 - '18년 대비 두류는 45만원/ha, 조사료는 30만원/ha 인상
- 지자체 여건에 따라 농식품부와 사전협의 후 예산 범위 내에서 품목군별 지원단가 조정 가능

품목군별 지원 단가

구분	조사료	일반·풋거름작물	두류	휴경	전체(평균)
지원단가(만원)	430	340	325	280	340
사업계획면적(ha)	10,000	15,000	20,000	10,000	55,000

- | 조사료 | 사료용벼, 옥수수, 사료용피, 수단그라스 등 (단, 수단그라스는 판로 확보 또는 자가소비 농가에 한해 권장)
- | 일반작물 | 조사료, 두류, 풋거름작물, 벼, 무, 배추, 고추, 대파를 제외한 모든작물
- | 풋거름작물 | 풋배기콩, 헤어리베치, 세스바니아, 네마장황, 수단그라스, 옥수수, 수수, 트리티칼, 호밀, 해바라기, 코스모스, 유채, 메밀 등
- | 두류 | 일반콩(장류용 등), 강낭콩, 동부, 완두, 작두, 참두, 팥, 녹두, 땅콩 등
- | 휴경 | 7.1.~10.31.까지 농작물을 수확·판매 등을 목적으로 재배하지 않아야 하며, 농지의 영상 및 기능 유지 의무, 6~8월 중 심경·쇄토 1회 이상 권장

05 이행점검 및 지원금 지급

-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이행 점검 결과, 이상이 없는 농가(법인)에 '19년 12월 중 지원금 지급
-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2019. 11. 19일 까지, 결과통보를 받은 7일 이내에, 시장·군수·구청장(읍·면·동장)에게 재조사 요청
 - * 농관원은 재조사 요청을 받은 즉시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재조사 하고 그 결과를 시·군·구 및 읍·면·동에 통보
- 조사료 재배농지 중 10월말까지 특별한 사유없이 수확하지 않는 경우에 사료용벼는 부적합 처리하고 그외 조사료 품목에 대해서는 풋거름 작물로 지원금 지급(피해농지 제외)
- 풋거름 작물로 두류를 재배하려면 2종 이상 혼합재배(혼파) 하는 경우에만 풋거름 작물로 인정[두류 단일품종만 풋거름용으로 재배(단파) 시 두류 지원금 지급]
- '19년 사업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1~6월까지(상반기) 작물 재배하고 이후 사업기간(7.1.~10.31.) 동안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경 지원 단가(280만원/ha) 적용
- 농업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작물은 이행점검 전까지 자율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며, 변경 희망 농업인은 반드시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사항 변경

06 민간 참여 운동 전개

- 쌀 전업농은 벼 재배농지의 10% 타작물 재배 참여, 한우협회·낙농육우협회 등은 1필지 조사료 재배 참여 운동 전개

사업 추진 체계

1. 농타작물재배지원사업 계획수립·통보

농림축산식품부 → 시·도 → 시·군

- 농림축산식품부 : 시도별 물량배정, 세부계획 수립 및 지침 시달

2. 농타작물재배지원사업 계획수립

시·도 및 시·군

-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는 농산부서, 축산부서, 기술원(센터), 쌀·축산 농가 등이 참여하는 농타작물재배지원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·운영(15명 내외)하고, 해당 시군의 농 타작물재배 계획 수립·심의,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심의회, 사업추진단계 점검 및 종료 후 평가 등 역할 수행

3. 사업대상자 선정

시·군(읍·면·동)

- 사업신청 : 읍·면(리·통)·동 주민센터 및 마을대표 농가에 비치한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농지소재지의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제출
- 사업자 선정 : 시장·군수(읍·면·동장)·구청장 | 읍·면·동 또는 시·군별 목표 면적 범위 내에서 사업자 선정
- 사업신청자와 신청농지의 적합여부, 중복신청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전산 관리(시장·군수·구청장)
 - |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확인 결과를 계통 보고
 - | 사업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사업신청 시 제출 받았던 약정서에 서명날인 후 2부 중 1부를 사업대상 농지 선정내역과 함께 사업신청인에게 통지
 - *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인에게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

4. 사업 추진

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추진

- 사업 추진상황 점검(농림축산식품부, 지자체 합동)
- 사업 추진 이행 점검 및 이의접수·확인(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)
- 시·도로 자금 배정(농림축산식품부)
- 사업비 집행(지원) 및 정산 결과 농식품부에 보고(시·도지사)

5. 사업 평가

농림축산식품부, 시·도

- 사업 추진 결과 분석
-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

2019년 농타작물재배지원사업 주요 변경내용

	2018년	2019년
1. 목표면적, 사업예산	• 목표면적 : 50,000ha • 사업예산 : 1,700억원* *국비 80%, 지방비 20%	• 목표면적 : 55,000ha • 사업예산 : 1,870억원* *국비 80%, 지방비 20%
2. 지원단가 및 품목별 면적	• ha당 평균 340만원 지원 - 조사료 400만원/15천ha - 일반 340/20천ha - 두류 280/15천ha	• ha당 평균 340만원 지원 - 조사료 430만원/10천ha - 일반 340/15천ha - 두류 325/20천ha - 휴경 280/10천ha(신규)
3. 사업대상 제외품목	• 배추, 무, 고추, 대파	• 배추, 무, 고추, 대파
4. 사업대상 농지	• '17년 전환농지(신청면적의 50% 보조금 지급) • '17년 변동직불금 수령농지 • '17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(직불금 미수령농지 대상)	• '18년 사업참여 농지(100% 보조금 지급) • '18년 변동직불금 수령대상 농지 • '18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
5. 휴경포함 여부	• 해당 없음	• '휴경'을 사업대상에 포함하되 실경작자에 한해 참여, 농지관리 의무 부과
6. 종자확보	• 사료용 벼 158톤(3.2천ha) *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30톤, 국립종자원 28톤 • 사료용 옥수수 54톤(1.8천ha) • 콩 1,100톤(18천ha, 국립종자원)	• 사료용 벼 450톤(9천ha) * 농업기술실용화재단 400톤, 국립종자원 50톤 • 사료용 옥수수 120톤(4천ha) • 콩 1,610톤(27천ha, 국립종자원)
7. 조사료 재해보험 품목도입	• 해당 없음	• 사료용 벼, 사료용 옥수수 전용보험 상품도입(2품목)

문의처

- 사업내용 관련 시·군(농업담당 부서), 읍·면사무소 및 주민센터
- 재배기술 관련 도 농업기술원, 시·군 농업기술센터
- 기계장비 관련 각 시·군 농업기술센터(농기계임대사업소)
- 조사료 관련 시·군(축산담당 부서), 지역 농·축협(조사료담당)
- 종자구입 관련 (공) 국립종자원(지원) (조사료) 옥수수 : 지역 농·축협 및 한국농업육우협회(도지회 조사료담당) 총체비 : 국립종자원(지원), 농업기술실용화재단(종자사업팀)
- 이행점검 관련 시·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

